

## 5-5.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


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

### 지원 대상

-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범위액으로 계산된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.

가. 에너지절약형 시설<sup>209)</sup>(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
 나. 중수도<sup>210)</sup>와 절수설비<sup>211)</sup> 및 절수기기<sup>212)</sup>  
 다. 신에너지<sup>213)</sup> 및 재생에너지<sup>214)</sup>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·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### 지원 내용

-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75%)를 더하거나 뺀 범위(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)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

### 유의사항

-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
- 농어촌특별세 과세

209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

210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

211) 「수도법」 제3조 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

212) 「수도법」 제3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

213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

214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

### 절차 및 제출서류

-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'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'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-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·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
- 감가상각의제, 즉시상각의제, 상각부인액처리 규정은 준용함.
-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·보관
-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### 관련 법령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8조의 4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5조의 4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4조 제1항